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4.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방송통신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대상 확대 등(안 제37조의12제1항)

나.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(안 제37조의12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12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2시간 이내로 중단된 경우.

제37조의1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경우는 제외한다”를 “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휴대전화 문자메시지”를 “문자메시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밖에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가 가능한 전자고지 방법 이용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12(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)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,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제37조의12(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	<u><삭 제></u>
5.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(부가통신역무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)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. 다만, 중요통신시설(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른	5.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2시간 이내로 중단된 경우. ----- -----

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)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

과도하게 집중된 경우

나.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

오류가 발생한 경우

6. (생략)

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(再開)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

-----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가. < 삭제 >

나. < 삭제 >

6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
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. 다
만,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
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
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
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
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
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
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
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
<신설>

3. (생략)

④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문자메시지 -----

3. 그밖에 이용자에게 개별적으
로 고지가 가능한 전자고지
방법 이용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	
연 락 처	(02) 2110 - 1528